



제18955호 2017. 2. 23.(목)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8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3호(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4

○환경부고시제2017-47호(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7

○여성가족부고시제2017-8호(청소년유해매체물) 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5호(건설신기술 지정).....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6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6

○교육부고시제2017-114호(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호(비행장<육상헬기장> 설치허가)..... 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6호(시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0호(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중정정).....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9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2호(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3호(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4호(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3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5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4

(이면 계속)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국방부공고제2017-3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
○국방부공고제2017-4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9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37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4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8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9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3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4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환경부공고제2017-144호(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2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6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7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8호(신기술 지정 신청)	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52호(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4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70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81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문화재청공고제2017-80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문화재청공고제2017-81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병무청공고제2017-1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5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1호(행정처분).....	95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호(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9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7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98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4호(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9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공시송달).....	9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공시송달).....	100

【법 원】

○대법원규칙제2722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대법원규칙제2723호(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6
○대법원규칙제2724호(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9
○대법원규칙제2725호(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0
○대법원규칙제2726호(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1
○대법원규칙제2727호(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대법원규칙제2728호(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3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4호(보조금 지급) 117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7-31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117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118

【상 훈】

○서훈(외교부) 12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121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121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121

○결정(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122

○면책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212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서영엔지니어링(박광준/최태형) ② (주)무량기술(최정진)

나. 전화번호 : ① 02-6915-7000 ② 031-227-746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6호

3. 명칭 :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 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임.

<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진남희) ② (주)씨에스구조엔지니어링(김중수) ③ 코스피(주)(안승환) ④ 장우석

나. 전화번호 : ① 02-3016-2970 ② 02-3497-7865 ③ 02-3663-2700 ④ 032-822-253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7호

3. 명칭 :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셸, 돔, 아치형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